

# 고성군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19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. 5. 10. 이쌍자 의원 등 6인

나. 회 부 일 자: 2023. 5. 1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3. 6. 02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이유

고성군 내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유도선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라.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

나.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-20호

- 예고기간: 2023. 5. 12.(금) ~ 2023. 5. 1.(수) [5일간]
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없음

### 5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### ○ 제정 목적

-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운전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의원 발의된 안건임.

### ○ 주요내용 검토

- (안 제1조 ~ 제3조) 조례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(안 제4조 ~ 제6조)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장소,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우선 설치 근거, 시공 기준, 관리, 관계기관 협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.

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고성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,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특히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, 향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## 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8. 토 론 : 없음.

## 9. 심사결과 : 2023. 6. 2. 원안가결